

MARIA CALLAS HALL

대 관 규 약

대 관 규 약

●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알피스페이스가 운영하는 마리아칼라스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 315)내 부대 시설의 운영 관리 및 대관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세미나',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내규를 인정하고 마리아칼라스홀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관의 범위는 마리아칼라스홀의 대관을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1) 대관의 종류는 시간에 오전 오후 저녁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준비, 철수, 철야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 대 관 료

제 4 조 대관료 산정

- (1) 대관료는 마리아칼라스홀이 정하는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제 5 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1)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계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을 대관 당일 전까지 마리아칼라스홀에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대관료 반환 및 납입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마리아칼라스홀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마리아칼라스홀 내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2) 마리아칼라스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
당일~6 일전 취소 100% 납입
1 주전 취소 50% 납입
2 주전 취소 30% 납입
3 주전 취소 20% 납입
* 총 견적금액 기준
- (4) 연주자 섭외완료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
당일~1 주전 취소 100% 납입
섭외완료 후~2 주전 취소 80% 납입
* 공연료 기준

● 대관신청 및 승인

제 7 조 대관신청

- (1)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사용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마리아칼라스홀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마리아칼라스홀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 ④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 ⑤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⑥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 ⑦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청

제 8 조 대관승인

- (1) 마리아칼라스홀은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2) 마리아칼라스홀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마리아칼라스홀과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4)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대관승인취소, 변경금지, 공연취소

제 9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마리아칼라스홀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② 마리아칼라스홀이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③ 마리아칼라스홀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⑤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10 조 공연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1) 대관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 (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리아칼라스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마리아칼라스홀은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3)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 6 조에 의해 처리된다.

● 공연장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제 11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마리아칼라스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마리아칼라스홀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마리아칼라스홀이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마리아칼라스홀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2)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마리아칼라스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리아칼라스홀의 요청 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마리아칼라스홀에 제출하여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마리아칼라스홀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3)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4)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5)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 파손 시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6)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7) 마리아칼라스홀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마리아칼라스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9)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마리아칼라스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 (10)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마리아칼라스홀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홍보물, 방송 협의

제 13 조 광고 홍보물 협의

-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마리아칼라스홀과 관련된 사항은 마리아칼라스홀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마리아칼라스홀이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첨한다.

제 14 조 방송중계, 판촉

마리아칼라스홀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마리아칼라스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마리아칼라스홀과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마리아칼라스홀은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공연진행 및 스탭회의

제 15 조 공연진행협조

(1) 스탭회의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15 일전까지 신청서(부대사용)를 제출해야 한다. 대관자는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마리아칼라스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2) 무대진행 및 대기실 관리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마리아칼라스홀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②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마리아칼라스홀 무대감독이 진다.

(3) 공연진행

- ①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 중 문제발생 시 마리아칼라스홀의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부 칙

제 16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17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마리아칼라스홀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대관자는 마리아칼라스홀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마리아칼라스홀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18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19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